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09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강경숙 · 김재원 · 백선희
황운하 · 신장식 · 박은정
차규근 · 김문수 · 이해민
김준형 · 서왕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및 학교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재교육을”을 “재교육과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 명단 요청에 관한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 명단 요청의 시기·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위탁”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체육지도자의 명단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의6제2항을”을 “제11조의6제3항을”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u>
	<u>항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하</u>
	<u>는 체육지도자의 명단을 교육</u>
	<u>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u>
	<u>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u>
	<u>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u>
	<u>에 따라야 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u>	④ -----
<u>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u>	<u>-----재교육과 제2항</u>
<u>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 명단</u>
<u>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u>	<u>요청에 관한 업무를-----</u>
<u>탁할 수 있다.</u>	<u>-----</u>
	<u>-----.</u>
④ <u>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u>	⑤ <u>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u>
<u>상 · 기간 · 내용 · 방법 · 절차</u>	<u>상 · 기간 · 내용 · 방법 · 절차,</u>
<u>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u>	<u>제2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u>
<u>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u>	<u>명단 요청의 시기 · 방법 및 제</u>
<u>으로 정한다.</u>	<u>4항에 따른 위탁-----</u>
	<u>-----</u>
	<u>-----.</u>

제5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1. <u>제11조의6제2항을</u>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1. <u>제11조의6제3항을</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